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18
----------	------

2020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홍성룡 의원(찬성자 12명)
- 나. 발의일자 : 2020년 10월 15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 라. 상정결과 :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홍성룡 의원)

가. 제안이유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기 타 :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제정조례안은 일제 강점기 및 그 직전에 일본제국주의에 부여한 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들의 조사·연구·홍보를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자 함.
- 동 조례안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정기를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관계법령으로 발의되었음.
- ‘친일반민족행위’란 동법 제2조1)에 따라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업을, 안 제7조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만, 의원요구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시행한 적이 없으므로 조례제정과 함께

-
8. 일본제국의회 의회 귀족의원 또는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안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의 방향과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할 것임.

- 동 제정조례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연구·홍보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후세에 이를 교훈으로 남겨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려는 취지로 일제에서 해방된지 76여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규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친일문제의 역사적 해악을 객관화함으로써 반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 정의와 상식이 기반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초석을 세운다는 대승적 시각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지영	02-2180-8115

의안번호
1823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2020.8.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안됨 ○ 조례안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추진경과	○ 2020.8.12. 조례안 발의(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부 서 검 토 의 건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제정조례안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입법취지에 공감함 ○ 다만,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단체)를 활용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자문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본부 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기존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p>[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단체) 활용 및 보조금 지급 규정 등 명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5조 및 제6조의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홍보사업 추진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 마련과 ○ 재정적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규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규정 미비로 실제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마련 필요 		

<p>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p>	<p>[위원회 설치 규정안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7조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문화본부 내에는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역사도시서울위원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문화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시사편찬위원회)에 따라 각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회를 신설하기 보다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사도시서울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p>[종합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단체)를 활용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자문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본부 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기존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p>대응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검토내용 등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방문 설명 				
<p>상 임 위 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p>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p>담당부서</p>	<p>역사문화재과</p>	<p>팀장</p>	<p>김지혜(☎2133-2612)</p>	<p>담당</p>	<p>전소영(☎2133-2613)</p>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8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5일

발 의 자 : 홍성룡, 김정태, 박기열, 박순규,
봉양순, 송아량, 송정빈,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최웅식, 최정순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란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조사·연구와 홍보 등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력·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의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사업에 관한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제6조(사업추진),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추계결과 ≍ 408,8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408,800천원으로 연평균 81,76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실태조사(제5조)는 3년에 1번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의 유사 연구용역을 준용하여 추계
 - 사업 추진(제6조)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유사사업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제7조)은 12명(시의원 1명, 담당 국장 1명,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 2회(정기회 2회 기준)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협력체계 구축(제8조)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나.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408,800천원
 - 총비용 = 실태조사 비용 + 사업(토론회, 학술대회 등) 추진 비용 +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협력체계 구축 비용
 - = 75,200천원 + 200,000천원 + 23,600천원 + 11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제5조)	37,600	-	-	37,600	-	75,200
	사업(토론회, 학술대회 등) 추진 (제6조)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7조)	4,720	4,720	4,720	4,720	4,720	23,600
	협력체계 구축 (제8조)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110,000
	소계(b)	104,320	66,720	66,720	104,320	66,720	408,800
	총비용(b-a)	104,320	66,720	66,720	104,320	66,720	408,800

$$1) \text{ 실태조사 비용} = \sum_{i=1}^5 (\text{연간실태조사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실태조사 비용 ≃ 37,600천원

* 실태조사비는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의 ‘광주 친일잔재 조사’ (2018) 용역사업비 준용(3년에 1회 실시 전제)

$$2) \text{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 등 비용} = \sum_{i=1}^5 (\text{연간토론회, 학술대회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 등 비용 ≃ 40,000천원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학술 사업(2020)

- 사업목표 :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정부·기업 등에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한·일 평화 우호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 마련과 관련 국가와 연대, 강제동원의 공감대를 확인하여 협력 도모

- 사업예산 : 40,000천원

· 일반수용비(31,000천원), 국내여비(600천원), 국외여비(4,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200천원), 임차료(2,500천원), 업무추진비(1,700천원)

※ 자료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주요사업(문화학술 사업) 자료 재작성

$$3) \text{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sum_{i=1}^5 (\text{연간위원회설치운영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 4,720천원

≙ 참석수당 + 업무추진경비

≙ (200천원×10명×2회)+(30천원×12명×2회)

※ 지급인원 : 참석수당은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 등 2명을 제외한 10명, 업무추진경비는 12명을 기준으로 추계

※ 참석수당 단가 : 「서울특별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기본료 15만원을 준용하고, 위원회가 2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초과비용 5만원을 포함

※ 업무추진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

4) 협력체계 구축 비용 = $\sum_{i=1}^5$ (연간협력체계구축비용)_i

_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협력체계 구축 비용 ≙ 22,000천원

※ 서울시교육청 독도교육활성화지원 사업(독도주권의식 강화)

- 사업내용 : 독도 교육정책의식 강화 및 울릉도·독도 교육여행 활성화를 위한 울릉군청과의 MOU 이행

- 사업예산 : 22,000천원

※ 자료 :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주요사업별 설명 자료 재작성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무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